**청 구 취 지**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

금 [deposit]원

위 1항 금액에 대하여 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
독촉절차비용 : 금 63,400원 (내역 : 송달료: 62,400원, 인지대 1,000원)

**청 구 원 인**

**1. 임대차 보증금 채권의 발생**

임대차 계약의 내용

채권자는 채무자와 [end\_date]까지, [home\_address](이하 '이사건 임대차 목적물')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[deposit]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(이하 '본 건 임대차계약'이라고 합니다)

보증금의 지급

이에,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 건 임대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[deposit]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
보증금 반환 채권의 발생

따라서,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 종료 시에 따른 보증금 [deposit]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**2.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**

그런데 채무자는 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임대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명도하였음에도 채권자에게 본 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하고있지 아니한바 본 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[deposit]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.

**3. 결론**

채권자는 위와 같이 본 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지급의 요구를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고 있어, 위 임차보증금 [deposit]원에 대하여 로 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따라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바,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.

**입증방법**

1.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
2.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통지에 관한 증빙(내용증명, 카톡 문자 등)

3.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증빙자료

**서울동부지방법원 독촉전담부 귀중**